

#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팬오션 주식회사

#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制定 2013. 02. 21.

改定 2015. 08. 12.

改定 2022. 05. 09.

改定 2026. 03. 27.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Pan Ocean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정관 제 42조 및 제 43조에 따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가 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의2(주주제안권)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, 의장을 포함한 과반수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
#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 및 소집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6조 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.

# 제 3 장 회 의

## 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 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**제9조 (결의방법)**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의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단 독립이사후보의 추천에 관하여, 위원 본인이 독립이사 후보인 경우 해당 위원은 결의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### **제10조 (부의사항)**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독립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**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**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**제12조 (보고의무)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 후 최초소집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3조 (통지의무)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 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#### **제14조 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## **제 4 장 보 칙**

#### **제15조 (간사)**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장이 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 **제16조 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 **부 칙 (2013.02.21 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 (2015.08.12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 (2022.05.09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 (2026.03.27 개정)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운영규정 명칭, 제1조, 제3조 1항 및 2항, 제4조 2항, 제10조의 1의 용어 변경(사외이사→독립이사)의 개정 규정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.